#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축약본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22.(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235입니다.

■ 주택전시관은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 운영되며, 입주자모집공고는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홈페이지(https://www.dicon-apt.co.kr)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

■ 시흥장현 B-10블록은 디엘건설 주식회사 브랜드인 'e편한세상'을 사용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시흥시)은 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m'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이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6년이 적용되며, 「주택법」제57조 의2에 의거해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6년	「주택법」제64조,「주택법 시행령」제73조
거주의무	최초입주가능일	3년	「주택법」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2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 84	옷 계약 중 구표 결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해당,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2022.05.02.(월)	2022.05.03.(화)	2022.05.04.(수)	2022.05.12.(목)	2022.05.13.(금) ~2022.05.18.(수)	2022.06.20.(월) ~2022.06.24.(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현장접수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별도 안내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비고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급은 현장방문접수(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 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세대주 요건

신청 자격			일반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필요 (6개월, 6회 이상) ※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자산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 1. 공급규모

■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B-10블록) : 공공분양주택 지하2~지상25층 4개동 전용면적 85m이하 431세대 (특별공급 364세대, 일반공급 67세대)

2	2. 공급대상																					
■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B-10블록)												(E	난위 : m², 세대)									
	세대당 주택면적(m) 공급세대수								네대수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주택형		주택형	주택 타입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세대별 대지지분		특별공급						최하층 배정	입주 예정
진호			디디팝	주거 전 <del>용</del>	주거 공 <del>용</del>	공급면적 (계)	기타 공 <del>용</del>	지 하 주차장	면적 (계)	(m²)	계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일반 공급	ac 공급 세대수	시기		
		합계 431 43 129 107 21 21 43 67								18												
2022-	01	084.9875A	84A	84.9875	24.9018	109.8893	5.1018	47.2040	162.1951	60.3643	238	23	72	59	11	11	23	39	10	2024년		
000235	02	084.9892B	84B	84.9892	26.2310	111.2202	5.1019	47.2050	163.5271	60.3655	96	10	28	24	5	5	10	14	4	8월		
	03	084.9903C	84C	84.9903	24.4584	109.4487	5.1019	47.2056	161.7562	60.3663	97	10	29	24	5	5	10	14	4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접수 마감시간 전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습니다.(m'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 × 0.3025 또는 m'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024년 8월로 예정되어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시흥도시공사와 디엘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이하임건설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 3. <u>공</u>급금액 (분양대금)

(단위 : 원, 세대) 잔금(30%)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융자금 세대 10% (주택도시 주택형 타입 층별 제외금액 기금) 2022.09.20. | 2022.12.20. | 2023.04.20. | 2023.08.21. | 2023.12.20. | 2024.04.22. 4 | 455,760,000 | 45,576,000 45,576,000 | 45,576,000 | 45,576,000 | 45,576,000 | 45,576,000 | 45,576,000 | 61,728,000 | 75,000,000 10 | 460 610 000 | 46 061 000 | 46 061 000 | 46 061 000 | 46 061 000 | 46 061 000 | 46 061 000 | 46 061 000 | 63 183 000 | 75 000 000 2층 1001 47,856,000 | 47,856,000 | 47,856,000 | 47,856,000 | 47,856,000 | 47,856,000 | 68,568,000 | 75,000,000 084.9875A 3층 478,560,000 47,856,000 1004 10 | 48.0.10.000 | 48.001.000 | 48.001.000 | 48.001.000 | 48.001.000 | 48.001.000 | 48.001.000 | 48.001.000 | 48.001.000 | 69.003.000 | 75.000.000 4층 204 | 484,860,000 | 48,486,000 | 48,486,000 | 48,486,000 | 48,486,000 | 48,486,000 | 48,486,000 | 48,486,000 | 70,458,000 | 75,000,000 2 | 449,650,000 | 44,965,000 | 44,965,000 | 44,965,000 | 44,965,000 | 44,965,000 | 44,965,000 | 44,965,000 | 59,895,000 | 75,000,000 1층 2층 4 | 454,440,000 | 45,444,000 | 45,444,000 | 45,444,000 | 45,444,000 | 45,444,000 | 45,444,000 | 45,444,000 | 45,444,000 | 75,000,000 1001 084.9892B 3층  $4 \quad \left| 472,150,000 \right| \left| 47,215,000 \right| | | 47,215,000 | | 47,215,000 | | 47,215,000 | | 4$ 1004 4 | 473,580,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7,358,000 | 4 4층 5층 이상  $82 \ | 478,370,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 | 47,837,000$ 4 | 433,900,000 | 43,390,000 | 43,390,000 | 43,390,000 | 43,390,000 | 43,390,000 | 43,390,000 | 55,170,000 | 75,000,000 1층  $4 \quad \left| 438,520,000 \right| 43,852,000 \left| 43,852,000 \right| 43,852,000 \left| 43,852,000 \right| 43,852,000 \left| 43,852,000 \right| 43,852,000 \left| 43,852,000 \right| 56,556,000 \left| 75,000,000 \right| 60,000 \left|$ 2층 100 4 | 455,610,000 | 45,561,000 | 45,561,000 | 45,561,000 | 45,561,000 | 45,561,000 | 45,561,000 | 45,561,000 | 61,683,000 | 75,000,000 084.9903C 84C 1004  $4 \quad \left| 457,000,000 \right| \left| 45,700,000 \right| \left| 62,100,000 \right| \left| 75,000,000 \right| \right| \\ \left| 45,700,000 \right| \right| \\ \left| 45,700,000 \right| \right| \\ \left| 45,700,000 \right| \left| 45,700,000 \right| \left| 45,700,000 \right| \left| 45,700,000 \right| \\ \left| 45,700,000 \right| \left| 45,700,000 \right| \left| 45,700,000 \right| \right| \\ \left| 45,700,000 \right| \left| 45,700,000 \right| \left| 45,700,000 \right| \\ \left| 45,700,000 \right| \left| 45,700,000 \right| \left| 45,700,000 \right| \\ \left| 45,700,$ 4층 81 | 461,610,000 | 46,161,000 | 46,161,000 | 46,161,000 | 46,161,000 | 46,161,000 | 46,161,000 | 46,161,000 | 46,161,000 | 63,483,000 | 75,000,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타입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인지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시흥도시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금대출보증 취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환대출 융자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여 야 중도금대출을 LTV 최대비율로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환대출 융자 포기 확인서 미제출시 중도금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사업주체 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4. 발코니 확장공사 [추가선택품목( I )]

■ 박코니환장공사[추가선택품목(1)]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u>발코니 확장 공사비</u> (단위: 원사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니다	0804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84A	4,436,000	700,000	3,736,000						
84B	3,928,000	700,000	3,228,000						
84C	5,156,000	700,000	4,456,000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다용도실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제외)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각 주택형별 발코니확장 금액에는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와 관련된 마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주택형·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청약 신청자격

■ 기과추처 및 국가유공자 특벽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 제1항 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 상자)로 선정하여사업주체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단, 예비대상자는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3.04.23. 이후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하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 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기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 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ㆍ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호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2015.04.23~2022.04.22) 기간 중 출생자,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를 말함. ② 입고~~ 2) 입구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1인만 가능합니다.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보급 입급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금))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1순위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 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란?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6.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PC : www.applyhome.co.kr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어플에서 "청약 Home" 검색 인터넷 청약신청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약 Home: 09:00~17:30) 생애최초, 신혼부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현장접수: 10:00~14:00)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2022.05.03.(화 (09:00~17:30) PC : www.applyhome.co.k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어플에서 "청약 Home" 검색 인터넷 청약신청 2022.05.04.(수)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09:00~17:30)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 (창구 접수시간: 09:00~16:0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현장방문접수(경기도 시흥시 배곤동 270,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주택전시관) 허용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악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은행 영업시간 내) 본 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시흥 장현지구

B-10블록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신청시간: 09:00 ~ 17:3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 (현장접수, 10:00~14:00) :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처에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표>6의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목록상의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일반공급 방문접수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은행 영업시간 내) : 노약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

의 구비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택전시관 접수 불가) 7.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감리회사

디엘건설 주식회사 (102-81-34561)

㈜이하임건설 (553-87-00733)



시흥도시공시

(140-82-00212)

8. e편한세상 시흥장현 퍼스트베뉴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위치안내 :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70

※ 현장방문시 주차공간이 없으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220-87-01360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27-81-60942)

■ 운영기간 : 2022. 05. 13.(금) ~ 2022. 05. 18.(수)

■ 운영시간: 10:00~17:00

岁031.311.0431 https://www.dlcon-apt.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